

#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안 번호	139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11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「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·운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## 주요골자

- 가.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
(안 제1조, 제2조 및 제3조).
- 나.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규정함(안 제5조).
- 다.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안산시통합관리기금운용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, 제7조).
- 라.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결산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3조).
- 마. 기금의 융자기간, 융자금의 이자계산,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규정함  
(안 제17조, 제18조, 제19조).

## 제정 조례안 : 별첨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사전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5. 10. 17 ~ 2005. 10. 27(1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지침[표준(안)] 시달 [예산담당관-6712(2004.09.24)]

# **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산시 통합관리기금(이하 "통합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통합관리기금"이라 함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.
2. "보유자금"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(예금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3. "시금고"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치단체의 금고를 말한다.
4. "통합기금관리관"이라 함은 각 기금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·관리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영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.
5. "기금운용관"이라 함은 안산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.

**제3조(통합기금의 설치)**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.

**제4조(통합기금의 재원)**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
2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·예탁금
4.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
5. 기타 수익금

**제5조(통합기금의 용도)**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각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
2.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

**제6조(위원회의 설치)** ① 안산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 및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· 의결한다.

1.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

2.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

3.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

4.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

5. 유사 · 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·폐합 조정

6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.

**제7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(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의무)**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에서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9조(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)**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

②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국 · 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예탁기간 만료 전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.

**제10조(예탁금의 상환)**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에 따라 통합기금의 예탁을 상환 받을 수 있다.

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50일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예탁금의 이자지급)** 예탁금의 이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율을 각 기금별 출연지분율에 각 기금별 기간산정 후 계산하여 적용하며,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에 년 1회 지급한다.

**제12조(회계공무원의 지정)** ①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통합기금관리관 - 통합기금업무담당국장
2. 통합기금운용관 - 통합기금업무담당과장
3. 통합기금출납원 - 통합기금업무담당주사
4. 기금운용관 - 각 기금별 담당 국·소장
5. 기금출납원 - 각 기금별 주무담당주사 및 업무담당주사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.

**제13조(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)** ①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**제14조(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)** ①통합기금은 시장이 운용·관리하되,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관이 대행한다.

②통합기금관리관은 통합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통합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, 시장의 승인을 얻어 통합기금운용 전반에 관하여 지시할 수 있다.

③통합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·세출예산이외로 처리할 수 있다.

④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⑤각 기금별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배정계획)** ① 기금운용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금운용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 월별지출계획서에 의하여 각 기금의 월별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기금관리관이 이를 확정한다.

**제16조(배정 및 통지)** ① 기금운용관이 예탁된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의 월별배정계획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합기금배정요구서를 통합기금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 배정 요구를 받은 통합기금관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배정하고, 이를 해당부서 및 시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융자기간)**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기간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기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정한다.

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.

③ 시장은 융자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18조(융자금의 이자계산)** ① 융자금의 이율은 사업에 따라 연리 4퍼센트 이상 7퍼센트 이하로 하되,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.

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며,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.

**제19조(원리금 상환)** ①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년도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, 분할액을 계산할 때에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.

② 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15일, 6월 15일, 9월 15일 및 12월 15일로 한다.

③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12월 16일로부터 당해년도 3월 15일까지의 분 : 3월 15일

2. 3월 16일로부터 6월 15일까지의 분 : 6월 15일
3. 6월 16일로부터 9월 15일까지의 분 : 9월 15일
4. 9월 16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 : 12월 15일

④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 
당해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연체대출금리를  
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
⑤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·이자·원금의  
순으로 충당한다.

⑥융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기타 휴무일인 경우에는 시금고 영업일에  
준한다.

**제2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 
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"시금고에 예치 관리"를 "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 
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"으로 한다.

②안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"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"를 "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 
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"으로 한다.

③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3항 중 "시금고에 예치·관리"를 "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 
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"으로 한다.

④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"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도록"를 "「안산시  
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

예탁"으로 하며 제4조제5항은 삭제한다.

⑤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"시금고에 예치·관리"를 "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"으로 한다.

⑥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"를 "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"으로 한다.

⑦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"시금고에 예치, 관리"를 "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"으로 한다.

⑧ 안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"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"를 "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"으로 한다.

⑨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안산시금고에 예치·관리"를 "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"으로 한다.

⑩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예치금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고"를 "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며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예치금을 제외한"으로 하며, 제4조는 삭제한다.

⑪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시금고에 정기예금, 저축성예금, 국공채 투자 등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"를 "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"으로 한다.

⑫ 안산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안산시금고에 예치·관리"를 "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"으로 한다.

소관 실·과		기획 예산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획 예산과장 이범영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투자분석팀장 원운희
	담당자 성명·전화	전형훈 (행정 2056)

[별지제1호서식]

## ○○기금 월별 지출계획서 [조례제15조1항관련]

과목			예산액	1분기			2분기			3분기			4분기		
관	항	목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
200 . .

○○기금운용관 (인)

통합기금관리관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## 통합관리기금 배정요구서 (조례제16조1항관련)

### ○ 기금명 :

(단위 : 천원)

과 목					예산액(1)	기배정액(2)	금회 배정액 (3)	배정액누계 (2+3)	배정잔액 (1-2-3)	비고
관	항	세항	목	세목						

### ○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 (세항-목-세목)	지출액	지출일자	지출내용	지출근거	비고

200 . .

○ ○ 기금운용관 (인)

통합기금관리관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## 통합관리기금 배정통보서 [조례제16조2항관련]

○ 기금명 :

(단위 : 천원)

과 목					예산액(1)	기배정액(2)	금회 배정액 (3)	배정액누계 (2+3)	배정잔액 (1-2-3)	비고
관	항	세항	목	세목						

200 . .

통합기금운용관 (인)

○○기금운용관, 시금고 귀하

## 관계법령발췌서

#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(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※ 2005년 8월 4일 공포, 2006년 1월 1일 시행.

#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392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5. 11. 10.

제 안 자 : 의회 · 행정위원장

## □ 수정이유

- 통합기금의 조성 재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, 통합기금 결산 보고서의 심의 · 의결 시기를 의회 운영 일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“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 · 예탁금”을 “다른 기초자치단체, 타기관, 단체로 부터의 출연 · 예탁금”으로 수정함(안제9조 제3호)
- 통합기금 결산보고서의 심의 · 의결 시기를 “다음 회개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 제출하여 심의 · 의결” 반도록한 조항을 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 · 의결”반도록 수정함.(안제13조 제3항)

# **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**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**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**

**3. 다른 기초자치단체, 타기관, 단체로부터의 출연·예탁금**

**제1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**

**③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는 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**

# 신 구 조 문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4조(통합기금의 재원) 통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~2.(생략)</p> <p><u>3. 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·예탁금</u></p> <p>4.~5.(생략)</p>	<p>제4조(통합기금의 재원) 통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~2.(원안과 같음)</p> <p><u>3. 다른 기초자치단체, 타기관, 단체로부터의 출연·예탁금</u></p> <p>4.~5.(원안과 같음)</p>
<p>제13조(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)</p> <p>①~②(생략)</p> <p><u>③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기금 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u></p>	<p>제13조(통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)</p> <p>①~②(원안과 같음)</p> <p><u>③제2항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기금 결산 보고서는 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u></p>